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0. 28 조례 제31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체험·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육아나눔터 안에서의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조)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

(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